

● 제290회 ●
서울특별시의회(정례회)
제9차 보건복지위원회

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검 토 보 고 서

2019. 12. 17.

보 건 복 지 위 원 회
수 석 전 문 위 원

【서울특별시장 제출】

의안번호 1211

I. 조례안 개요

1. 제안경위

가. 제 출 자 : 서울특별시장

나. 제출일자 : 2019년 11월 7일

다. 회부일자 : 2019년 11월 8일

II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1. 제안이유

가. 서울특별시는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를 확립하고 서울특별시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, 먹거리보장을 실현하는 등 먹거리정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시민과 함께 서울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서울특별시 먹거리시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.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 확립을 위한 먹거리마스터플랜 2030 수립 발표 이후 자문관 및 위원회의 역할축소에 따라 운영 횟수 등을 조정하고 분과위원회를 2030수립 핵심가치 방향에 맞추어 통·폐합 (10개→7개 분과) 하여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먹거리시민위원회 운영을 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먹거리정책자문관 조문 변경(안 제10조)

나. 먹거리시민위원회의 구성 변경(안 제23조)

- 위원을 총 105명(당연직 제외)으로 구성하도록 변경

다. 먹거리시민위원회 위원장 연임 횟수 변경(안 제24조)

- 위촉위원 중 호선된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변경

라. 위원회 정기회의는 반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변경(안 제26조)

마. 기획조정위원회 변경(안 제27조)

- 위촉위원 중 지명된 기획조정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변경, 기획조정위원회 회의는 격월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, 위원은 25명 이내로 구성

바. 분과위원회 변경(안 제28조)

- 분과위원회 10개 종류 중 7개를 통폐합하여 4개의 분과위원회로 조정(먹거리생태·상생분과, 먹거리건강·보장분과, 먹거리공동체분과, 먹거리문화교육홍보분과)하여 총 7개의 분과위원회 운영으로 개편
- 분과위원회 회의는 격월 1회 개최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

나. 예산조치: 협의완료

다. 기 타

(1) 신·구조문 대비표: 별도 첨부

(2) 입법예고(2019. 9. 11.~ 10. 1.) 결과 : 별도 첨부

(3)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: 별도 첨부

Ⅱ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이문성)

1 개정안의 취지

- 개정안은 먹거리시민위원회의 분과위원회를 조정하여 내실있는 운영을 하고자 서울특별시장의 제출한 안으로 먹거리시민위원회의 분과 수의 조정, 회의 개최횟수의 조정 등을 통하여 먹거리시민위원회의 안정적이고 내실있는 운영을 하고자 하는 안임.

2 개정안의 주요내용 검토

가. 먹거리시민위원회의 운영과 관련

- 먹거리시민위원회는 「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 조례」 제21조¹⁾에 의하여 운영되는 것으로 동 조례 제22조²⁾에 의하면 위원회는 먹거리 정책 및 방향 정책의 통합·조정, 먹거리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등의 기능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음.
- 개정안(제23조)은 먹거리 시민위원회의 위원수를 105명으로 줄이고, 분과위원회를 현재의 10개에서 7개로 줄이는 안으로 먹거리시민위원회의 회의개최실적을 살펴본 결과 분과위원회 별로 회의 개최실적이 상이하고 참석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먹거리시민위원회의 활동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임.

1) 제21조(위원회의 설치) 시장은 먹거리정책의 지속적 추진과 확대·발전을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2) 제22조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자문한다.

1. 먹거리정책 방향 및 정책의 통합·조정
2. 먹거리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
3. 먹거리정책 지표 설정 및 공표
4. 시민사회, 산업계, 학계, 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상호 협력
5. 먹거리정책 기본계획 관련 협치 모델 개발 및 사업추진
6. 시민의 참여를 통한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 실현을 위한 환경조성
7.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

따라서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할 수 있음.

현행	개정안
제23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<u>1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u>	제23조(구성) ①----- ----- <u>105명</u> 이내 (당연직 제외)의 <u>위원으로 구성</u> <u>되,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</u> <u>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</u> <u>한다.</u>
② ~ ⑤ (생략)	② ~ ⑤ (현행과 같음)

<먹거리 시민위원회 분과별 회의개최 실적>

연번	분과위원회 명	회의개최실적	참석율 ³⁾
1	공공급식분과위원회	10	56.0%
2	도시농업분과위원회	7	73.3%
3	식품안전분과위원회	7	57.5%
4	도농상생분과위원회	16	62.6%
5	지속가능식생활분과(영양과건강)	11	53.5%
6	먹거리사회적경제분과(먹거리산업)	13	45.6%
7	먹거리자치분과위원회	18	61.7%
8	먹거리문화교육홍보위원회	15	62.7%
9	먹거리생태분과위원회	14	64.6%
10	먹거리복지분과위원회	12	53.3%
	전체평균	12.3(회)	59.1%

- 또한 현행 조례는 먹거리시민위원회의 각 분과별 회의를 매월 1회 개최하도록 하고 있으나 먹거리시민위원회의 각 분과 회의가 매월 개최되지 않은 상황으로 격월 1회로 개정하는 개정안은 타

3) 위원이 중도사퇴하는 경우 위원회 구성원이 줄어든 것을 반영한 실질 참석율임. 예를 들어 15명 정원에 10명이 참석하는 경우 66.6%가 되나 위원이 중도에 사퇴하여 12명이 정원이 되는 경우 83.3%로 계산됨.

당하다 할 것임(제28조).

- 개정안 제26조는 먹거리시민위원회 위원회 전체회의에 대한 조정안으로 분기 1회를 반기 1회로 바꾸는 안임.

현 행	개 정 안
제26조(위원회 회의 등) ① (생략) ②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, 정기회는 <u>분기 1회</u>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,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.	제26조(위원회 회의 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<u>반기</u> ----- ----- ----- -----.

- 먹거리시민위원회와 관련하여 지나치게 많은 분과의 수와 회의 참석과 관련하여 위원회 위원의 피로감이 있는 상황으로 먹거리시민위원회가 심도 있고 밀도 높은 회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음. 따라서 동 조례 개정안을 통해 먹거리시민위원회의 분과 수 조정과, 먹거리 시민위원회 회의 횟수 조정을 통해 먹거리시민위원회의 내실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.

현 행	개 정 안
제28조(분과위원회) ① <생략> 1. <u>공공급식분과위원회</u> 2. <u>도시농업분과위원회</u> 3. <u>식품안전분과위원회</u>	제28조(분과위원회) ① <생략> 1. (현행과 같음) 2. (현행과 같음) 3. (현행과 같음)

현행	개정안
<p>4. <u>도농상생분과위원회</u></p> <p>5. <u>지속가능식생활분과(영양과건강)위원회</u></p> <p>6. <u>먹거리사회적경제분과(먹거리산업)위원회</u></p> <p>7. <u>먹거리자치분과위원회</u></p> <p>8. <u>먹거리문화교육홍보분과위원회</u></p> <p>9. <u>먹거리생태분과위원회</u></p> <p>10. <u>먹거리복지분과위원회</u></p> <p>②·③ (생략)</p> <p>④ 분과위원회 회의는 <u>월1회</u> 하되, 분과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분과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분과위원회 회의를 할 수 있다.</p>	<p>4. <u>먹거리생태·상생분과</u></p> <p>5. <u>먹거리건강·보장분과</u></p> <p>6. <u>먹거리공동체분과</u></p> <p>7. <u>먹거리문화교육홍보분과</u></p> <p><삭제></p> <p><삭제></p> <p><삭제></p> <p>②·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----- <u>격월 1회로</u>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

※ 분과위원회별 세부사항은 원안 참조

나. 민간인 자문관 규정과 관련하여

- 개정안 제10조는 먹거리정책자문관을 두는 규정으로 현행 조례는 먹거리정책자문관으로 직책명을 규정하였으나 개정안은 「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민간전문가를 둘 수 있게 하고 있음.
- 현행조례와 개정조례는 형식상 차이가 존재할 뿐 내용상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님. 다만, 조례에 해당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

서울시가 제출한 2020년 예산(안)에는 먹거리시민위원회의 민간 전문가 관련 예산이 없는 상황으로 현 시점에서 먹거리시민위원회와 관련하여 민간전문가를 위촉할 의사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- 개정안에 해당 내용이 삭제되었다 하더라도 「서울특별시 민간 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의하여 민간전문가는 위촉할 수 있음.⁴⁾

현행	개정안
제10조(먹거리정책자문관)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및 주요사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먹거리정책자문관을 민간전문가로 위촉할 수 있다.	제10조(민간전문가) 시장은 민간전문가를 위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「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민간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.

3 입법예고관련

-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결과 특별한 이견은 존재하지 않음. 입법예고결과와 조치결과를 살펴보면 조례 개정 후 제2기 위원회가 구성될 예정이며 먹거리전략 2030의 방향성을 고려한 분과위원회가 만들어지는 것으로 조례안의 제출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임.

4) 「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4조(적용범위) ① 이 조례는 시와 그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특정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를 위해 위촉하는 민간전문가를 대상으로 적용하며,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. ② 민간전문가 제도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민간전문가를 운영하는 소관 부서에서 특정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 여건에 따라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여 운용할 수 있다.

이는 개별 조례에 근거가 없어도 민간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할 것임.

입법예고결과 요약서

(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)

의견제출자	제 출 의 견	조 치 내 용(반영, 미반영)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먹거리시민위원회 기획조정위원회 윤병선위원장 외 (9. 27.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먹거리시민위원회와 협의 등을 통한 2차 조례개정 재추진 ○ 공공급식분과, 도시농업분과, 식품안전분과 유지 외 분과 재논의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시의회 설득하여 제출기한 연기 (10.16.→11.12.까지) ○ 먹거리시민위원회 공공급식분과, 도시농업분과, 식품안전분과 유지 반영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먹거리시민위원회 공동위원장 조현선 외 19명 (10. 1.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위원회의 존속기한 연장 개정조례 공포·시행에 따른 제2기 위원회 신속히 구성 및 위원회와 협의를 통한 조례개정 요청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조례개정 후('20. 1. 9.) 제2기 위원회 공개모집 구성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먹거리전략 2030 워킹그룹 김철규 위원장 외 (10. 2.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서울시 먹거리시민위원회 개편방향 제안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조례에 의해 설치된 '공공급식분과, 도시농업 분과, 식품안전분과'는 별도 위원회로 유지 - 서울 먹거리전략 2030 방향성을 고려하여 시민위원회 개편(지속가능 먹거리환경 조성 분과, 먹거리보장 분과, 먹거리공동체 활성화 분과, 먹거리 문화교육홍보 분과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먹거리시민위원회 공공급식분과, 도시농업분과, 식품안전분과 유지 반영 ○ 서울 먹거리전략 2030 방향성을 고려하여 지속가능 먹거리환경 조성 분과, 먹거리보장 분과, 먹거리공동체 활성화 분과, 먹거리 문화교육홍보 분과 반영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복지분과위원회 변혜진 위원 (10. 18.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먹거리정책자문관 조문은 삭제하지 말고 유지 의견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필요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먹거리정책자문관을 위촉 운영할 수 있음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생태분과위원회 최용재 위원 (10. 22.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생태분과위원회 유지 의견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기획조정위원회에서 재 논의

4 종합의견

- 먹거리시민위원회의 위원 수 조정, 분과위원회의 수 조정, 타 조례를 인용한 민간전문가 위촉 규정 및 분과위원회 회의 수와 먹거리시민위원회 전체회의 수 조정을 하여 먹거리시민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하는 조례안의 제출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.